

2022년 종료과제 연구개발비 상세정산 주요 지적사례 안내

(연구정산팀, '24. 12. 17.)

◇ 한국연구재단 지원과제 대상 상세정산 주요 지적사례를 안내하오니 동 내용을 참고 하여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※ 2022년 종료과제 연구개발비 정산 결과로 현재 적용 규정과 일부 다를 수 있음

1. 주요 지적사항

구 분	주요 지적내용	
연구시설·장비비	• 기관 공용 사용공간의 전기공사 비용 지출	
연구재료비	• 연구단 홍보를 위한 비용 지출	
연구활동비	• 연구활동비로 참여연구자가 아닌자에게 급여 지급	
	• 출장비 중복 집행	
	• 결의제목과 실제 구매항목 불일치	
	• 내부 참석자 회의에 따른 회의비 집행	
	• (영리기관) 연구실운영비 활용 관리계획 변경 승인 위반	
	· 지식재산권 출원 · 등록·유지 소요 비용 지출	
보안수당	• 인건비의 3%를 초과하여 보안수당 집행	
연구수당	• 연구근접지원인력에게 연구수당 집행	
	• (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) 인건비-연구수당 중복 집행	



2. 세부내용

- ① 연구시설·장비비 사용 기준 위반 사례
 - □ 관련규정

제21조(연구개발비 공통 계상기준)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직접비로 해당 연구개발과 제 수행에 필요한 금액을 계상하여야 한다.

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<u>간접비로 여러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공통적으로 소요되는</u> 비용으로서 필요한 금액을 계상하여야 한다.

□ 위반내용

- 기관의 공용(또는 타 사업비로 공간을 마련한) 사용공간의 전기공사 비용을 연구시설·장비비로 집행함
-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1조에 따라 기관의 공용 공간에 소요되는 비용은 직접비 집행이 불가하며 공간 특성 등을 고려하여 간접비로 집행하여야 함
- ② 연구재료비 사용 기준 위반 사례
 - □ 관련규정

제17조(성과활용지원비 사용용도) 제5조제2항에 따른 성과활용지원비의 사용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- 1. 과학문화활동비 : 과학기술문화 확산에 관련된 다음 각 목의 활동 비용
 - 가. 연구개발과 관련된 홍보를 위한 과학홍보물 및 행사프로그램
 - 나. 강연 체험활동 및 연구실 개방
 - 다. 홍보전문가 양성
 - 라. 그 밖에 과학기술 문화 확산에 관련된 활동

- 연구단은 행사 전시 모형 제작 및 방문자를 위한 체험 키트 제작 비용을 연구재료비(직접비)로 집행함
-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17조에 따라 연구단
 홍보를 위한 비용은 간접비에서 집행하여야 함



③ 연구활동비 사용 기준 위반 사례

□ 관련규정

제6조(인건비 사용용도) 제5조제1항에 따른 인건비의 사용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- 1. **참여연구자가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참여하는 동안 해당 참여연구자에게** 지급하는 급여(4대보험의 본인부담금을 포함한다)
- 2. 비영리기관의 연구부서에 소속되어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지원하는 연구지원인 력(이하 "연구근접지원인력"이라 한다)에게 지급하는 급여(4대보험의 본인부담금을 포함 한다)
- 3. 참여연구자가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참여하는 동안 해당 참여연구자에 대한 4 대보험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
- 4. 연구근접지원인력이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지원하는 동안 연구근접지원인력에 대한 4대보험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

제65조(영리기관 인건비 사용기준) ④ <u>영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</u>당하는 참여연구자에 대하여는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.

- 1. 중소·중견기업인 연구개발기관이 신규로 채용하는 참여연구자(채용일부터 연구개 발과제 공고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내인 연구자를 포함한다)
- 2. 「연구산업진흥법」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의 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제6조제1 항에 따른 전문사업연구자로 신고한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참여연구자
- 3. 연구개발성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의 소유로 하는 연구개발과제의 참여연구자 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건비의 현금 계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참여연구자
- 4. 중소·중견기업인 연구개발기관이 채용한 참여연구자 중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참여연구자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건비의 현금 계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참여연구자
- 5. 대기업인 연구개발기관이 채용한 참여연구자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건비의 현금 계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참여연구자
- 6.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건비의 현금 계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참여연구자 -중략-
- ⑥ <u>영리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참여연구자의 인건비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</u>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.

- 참여연구자가 아닌자(영리기관 계약직 직원)의 급여를 연구 활동비로 지급함
- 인건비는 참여연구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, 영리기관은 국가연구 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65조제4항에 따라 인건비 계상 가능 여부 확인 및 제6항에 따라 현금 계상 인건비 관리 계획 및 현황(사용 기준 별지 3호) 제출이 필요함



④ 연구활동비 사용 기준 위반 사례

□ 관련규정

제21조(연구개발비 공통 계상기준) ④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을 계상하여서는 아니 된다.

- 1. 환급받을 수 있는 관세, 부가가치세 등에 해당하는 금액(실제 환급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해당한다)
- 2. 주류 등 유흥성 비용
- 3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복계상으로 발생하는 비용

가. 동일한 비용을 2회 이상 중복계상

- 나. 동일한 비용을 현금과 현물로 중복계상
- 다. 동일한 비용을 직접비와 간접비로 중복계상
- 4. 하나의 연구개발과제에서 동일한 참여연구자에게 인건비와 학생인건비를 동일기간에 계상하여 발생하는 비용(참여연구자의 입학, 졸업 등 신분상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)

□ 위반내용

- 참여연구자의 출장비를 중복하여 계상함(원소속기관과 타기관 연구과제 수행)
-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1조에 따라 동일
 비용 2회 이상 중복 집행은 불가함

⑤ 연구활동비 사용 기준 위반 사례

□ 관련규정

제22조(연구개발비 공통 인정기준)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를 계상한 바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.

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사용(재난, 재해, 그 밖에 경제적・사회적으로 중대한 사유 발생에 따라 물품 및 서비스를 위한 계약이 취소・변경되어 수수료 등 부대비용이 발생하여 사용한 것을 포함한다)을 입증할 증명자료를 갖추어야 한다.

- ㅇ 결의 제목과 실제 구매항목이 불일치함
-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2조에 따라 실제 집행내역에 대한 증명자료 입증이 필요함



⑥ 연구활동비 사용 기준 위반 사례

□ 관련규정

제25조(연구활동비 공통 사용기준) ④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해당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된 자만 참여하는 회의에 대하여는 회의비 중 식비를 계상하여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정부출연기관의 기본사업에 대해서는 계상할 수 있다.

□ 위반내용

- 이 내부 참석자만(해당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된 자) 회의 참석 및 회의비를 집행함
-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5조제4항에 따라 회의비는
 외부 참석자가 회의에 참석할 경우에 한하여 사용 가능함

⑦ 연구활동비 사용 기준 위반 사례

□ 관련규정

제68조(영리기관의 연구활동비 사용기준) ② 영리기관의 장은 연구실운영비 중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을 계상하여서는 아니 되며, 사무용 기기 및 사무용 소프 트웨어에 소요되는 비용,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비용을 연구개발과제 의 협약 체결 당시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활용・관리계 획을 작성하여 연구개발계획서에 첨부한 경우에만 계상할 수 있다.

③ 영리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활용 • 관리계획을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73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- 영리기관은 연구실운영비 활용·관리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고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비용으로 에어컨을 구매함
-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68조에 따라 영리 기관은 협약시 연구실운영비사용계획서 제출 후 사용이 필수 이며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또한 사전 승인이 필요함



⑧ 연구활동비 사용 기준 위반 사례

□ 관련규정

제17조(성과활용지원비 사용용도) 제5조제2항에 따른 성과활용지원비의 사용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- 1. 과학문화활동비 : 과학기술문화 확산에 관련된 다음 각 목의 활동 비용
 - 가. 연구개발과 관련된 홍보를 위한 과학홍보물 및 행사프로그램
 - 나 강연 체험활동 및 연구실 개방
 - 다. 홍보전문가 양성
 - 라. 그 밖에 과학기술 문화 확산에 관련된 활동
- 2. 지식재산권 출원 등록비 :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비용
 - 가. 연구개발기관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
- •등록 유지에 필요한 모든 비용
 - 나. 기술가치평가 등 기술이전에 필요한 비용
 - 다. 표준 활동에 필요한 비용
 - 라. 연구노트의 작성·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 제정·운영 또는 연구노트 교육·인 식확산 활동. 그 밖에 연구노트 활성화 등에 관련된 비용

□ 위반내용

- 지식재산권 출원·등록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연구활동비의 지식재산 **창출 활동비**로 집행함
-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17조에 따라 지식 재산권 출원·등록 관련 비용은 가접비에서 집행하여야 함
- 연구활동비의 지식재산창출활동비와 구분하여 사용이 필요함

⑨ 보안수당 사용 기준 위반 사례

□ 관련규정

제26조의2(보안수당 공통 사용기준)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영 제45조에 따른 보안과제 (이하 "보안과제"라 한다)를 수행하는 참여연구자 및 연구근접지원인력별로 인건 비의 3퍼센트 범위 내에서 보안수당을 계상할 수 있으며, 계상한 보안수당은 해당 참여연구자 및 연구근접지원인력에게만 지급할 수 있다.

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(p.216)

보안수당은 보안과제를 수행하는 참여연구자 및 연구근접지원인력별로 **해당 연구개** 발과제에 계상한 인건비(미지급인건비 포함)의 3퍼센트 이내로 계상할 수 있으며, 계상한 보안수당은 해당 참여연구자 및 연구근접지원인력에게만 지급 가능함



□ 위반내용

- 연구개발과제에서 계상한 인건비(□지급인건비 포함)의 3%를 초과하여 보안수당을 지급함
-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6조의2 및 매뉴얼에 따라 보안수당은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계상한 인건비(미지급인건비 포함)의 3퍼센트 이내로 계상 가능함

⑩ 연구수당 사용 기준 위반 사례

□ 관련규정

제11조(연구수당 사용용도) 제5조제1항에 따른 연구수당의 사용용도는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참여하는 연구책임자 및 연구자(학생연구자를 포함한다)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장려금으로 한다.

□ 위반내용

- ㅇ 비영리기관 연구근접지원인력에게 연구수당을 집행함
-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11조에 따라 연구수당은
 연구책임자 및 연구자(학생연구자 포함)에게 지급하여야 함

⑪ 연구수당 사용 기준(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) 위반 사례

□ 관련규정

세목	사용용도	계상 및 사용기준
연구 수당	1. 학술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자 및 학생연구자(연구지원인력은 포함하지 않는다)에게 지급하는 능률성과급	2. 연구자가 해당 연구과제의 사업비에서 인건비 또는 학생인건비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연구수당을 계상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□ 위반내용

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사업비 사용기준에 따라 참여연구자가 해당 연구과제에서 인건비 또는 학생인건비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연구수당 계상이 불가함